

## 제41회 임시회 목포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55(4288)년 9월 26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 3. 개의성립

참석의원 : 13명

朴贊圭, 金永完, 金京炫, 孫白洙, 李文吉, 吳世一, 金八用, 金昌賢,  
金子洪, 金南鎭, 李在洪, 陳福春, 金慶禧

불참의원 : 8명

李小圭, 金三星, 李福柱, 鄭應杓, 明南喆, 林一男, 文宅鎬, 金吉煥

참석한 공무원

市長 및 各 課長

4. 개의선언 : 오전 10시 15분

### 5. 보고사항

1) 제 40회 회의록 낭독 통과

2) 내무위원회 회의 상황

(가) 양수장 부근 농작물 피해상황 조사의 건

◇書記 박찬대

-본 건 회의록 낭독이 있었음

※ 오전 10시 17분 李小圭의원 참석 14명

3) 7인 위원회회의상황 보고

(가) 사유지 관리의 건

◇書記 박찬대

-회의록 낭독이 있었음

4) 3인 위원회회의상황 보고의 건

◇金子洪 의원

-본 건 당시 조사위원으로부터 행정부의 협력에 심심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차후로는 여사 불상사를 야기 안 시키도록할 것이며, 사건 본인도 출근시 김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발언이 있었음

5) 차량 통행 금지구역 연장의 건

◇書記 박찬대

-서장 및 경비부사령관과 합의한 교통 사고방지 추진문을 낭독 하였음

◇陳福春 의원

-교육세 징수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나 다시 시에서 징수할 수는 없는가?  
또 민원서류는 어느 정도 시일을 요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市長 河東賢

-교육세 위촉 관계는 도의 승인을 득한 것이며, 계속해서 위촉 징수시킬 예정이다.

또 민원서류는 단일 즉결할 것이나 문서 성질상 타 관청과 합의할 내용문은 시간을 약속하기는 곤란한 문제다.

※ 오전 11시 5분 金三星, 李福柱, 鄭應杓의원 참회

※교육세 징수문제에 있어 교육세 징수직원 23명에 대한 시장 산하로서 포섭하여 시에서 직접 징수 시킨데에 대하여 각 의원과 시장간에 질의가 끝난

후

◇陳福春 의원

-시의원 5명과 행정부에서 구체적타합을 하여 교육세 징수 사무 환원책을 강구토록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동의  
(제청----7청)

표결 결과 재적 17명 중 가 7표로 부결

◇陳福春 의원

-행정조직 간소화에 있어 각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고 대통령 각하 께서도 각 부 장관에게 유시도 전달 되었다는 차제 본 문제를 연구하여 각 21명 시의원이 개수적으로 지방민의 복리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의회에 부의하되 행정조직 간소화에 시민의 복리 추진에 기여한바 있으면 요로 당국(대통령 각하, 국회, 국무위원회, 전문분과 위원회)에 건의토록 긴급 동의  
(재청----7청)

표결 결과 재적 17명 중 가 11표로 가결

◇金南鎭 의원

-과반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륙에 따라 면허세가 지방세로 이관 되었는데 그 면허세의 부과율이 모순된 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제2종 철근건물 면허세가 8,400환인데 판자집 건축도 동액이니 실정에 부합치 않으며, 갑종 요리점 면허세와 소소한 빙설업 면허세와 동액이다.

여사한 점에 비추어 국민의 3대 의무의 납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 각 정당한 부과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갑,을, 병, 정 혹은 1, 2, --- 10별로 종류를 구분하여 면허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중 면허세 중 일부를 개정토록 국회, 국무회의, 국회전임분과로 건의문을 발송할 것을 긴급동의

(재청----7청)

표결 결과 재적 17명 중 가 13표(가결)

6) 진정서(교량설치) 낭독

◇書記 박찬대

-낭독

◇鄭應杓 의원

-본 건 행정부로 이관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 결과 재석 17명 중 가 12명 가결

◇金南鎭 의원

-과반 사무감사시 직원간의 알선과 세금징수 관계가 지연되어, 해결이 않됨  
은 유감이다.

◇財務課長 이현두

-수입 정리분의 조속 정리할 것과 인화의 불비된 점은 재 검토하여 기대에  
알맞도록 하겠다.

◇鄭應杓 의원

-청소부 일당 300환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0환의 지불은 불명한 일이다.

◇社會科長 윤주석

-조속 실시토록 노력 하겠다.

◇金三星 의원

-관영요금 인하에 수반하여 예산면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사료된바 호별세  
부과 문제는 어떤가?

◇市長 河東賢

-처우 개선에 하등의 지시가 무함으로 2기분 호별세에는 참작될 것이다.

◇金永完 의원

-세농가(細農家) 대상으로 대여미가 방출 되겠는데 1인당 1두, 내지2두 정도  
가 1인당 30가마씩 할당되어 착복하고 있다는 실정을 볼 때 시에서는 당초

계획은 어떠하였는가?

◇産業課長 박연태

-각 동에서 5인회가 있어 연대 보증으로 되어 있어 동장을 신임하기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 하였으니 차이점 각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金永完 의원

-동장 중심 운운하나 최후 책임은 행정부에 있다.

앞 날에 여사한 일이 없도록 또 이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6인 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시 조사할 것을 동의

(재청)

표결 결과 재적 17명 중 가 16표, 가결

◇金三星 의원

-시 금고 이관에 있어 계약상으로 보면 갑 을간에 해약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여 갑 을간(시장, 조흥지점장)에 계약을 할 필요도 없다.

또 벌써 1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이관문제가 지지하니 이것은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한가?

◇市長 河東賢

-이는 자치법에 상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시장으로서는 즉시 승인 신청서를 냈고 나의 태도도 서면화하여 도에 있으며, 조속히 결정하여 달라고 하고 있다.

## 7. 부의안건

1. 1954(4287)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 건

2. 1955(4288)년도 목포시 제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의 건

◇孫白洙 의원

-본 부의안건은 각 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심 검토한 결과 다음 의회에

상정키로 동의

(재청)

재적 17명 전원 가결

◇議長

-회의록 서명에 孫白洙, 金南鎭의원을 지명

◇議長

-폐회선언

(오후 1시 26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1955(4288)년 9월 27일

議長:朴 贊 圭

議員:孫 白 洙

” :金 南 鎭

作成者 書記:洪 南 植